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27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03월 31일 김영옥 의원 외 1명(찬성 25명)
2. 회부일자 : 2025년 04월 02일
3. 상정일자 :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5년 4월 28일 상정· 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옥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마약류 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,123명에서 2022년 1만 8,395명, 2023년 27,611명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,271명(전국 22.7%)으로 경기도(6,678명/24.2%) 다음으로 높음.
-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

여 2021년에는 31.4%로 30대(25.4%)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36%에 달함.

- 마약류 사범 재범률도 2022년 35%, 2023년 기준 32.8%로 높은 수준임.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.
- 이에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추가(안 제3조제2항).
- 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 추가(안 제6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: 2025. 04. 05.~ 2025. 04. 09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주요 내용별 검토

1.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시장에게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> ② (생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② <u>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국회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이후에도 재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: 마약류관리법)」을 일부개정(2024. 10. 22.)한 바 있음.
- 개정된 「마약류관리법」 제2조의2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“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”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책임을 신설함.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507호, 2024. 10. 22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,123명에서 2022년 1만 8,395명으로 약 30.2% 증가하였으며,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.3%로 절도(50.0%)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.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① ~ ③ <생략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(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)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10. 22.>

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출처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개정안은 위 「마약류관리법」 개정사항을 이 조례 책무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,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.
- 또한,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최근 마약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, 치료보호·

감호¹⁾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-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역대 최대 인원인 27,611명을 기록함. 이는 지난 2019년 16,044명 대비 1.72배 증가한 수치임²⁾.
- 특히, 마약류 남용이 범죄집단이나 연예인 및 재력가 등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의 문제가 되고 있음. 최근 마약류 중독자들 중 일반인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10~20대 (2019년 23.4%→2023년 35.6%), 여성(2019년 22.3%→2023년 32.3%), 중산층 등의 마약중독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약중독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보편적인 만성질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³⁾.

1) 「마약류관리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“① 마약류(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)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”에게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, 법원은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“①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, ②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(害毒)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③ 알코올을 식음(食飲)·섭취·흡입·흡연 또는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”에게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음.

2) 대검찰청 (2024).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.
<https://www.spo.go.kr/site/spo/ex/board/List.do?cbIdx=1204>

3) 국회입법조사처 (2024).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. NARS 현안분석.
<https://www.spo.go.kr/site/spo/ex/board/List.do?cbIdx=1204>

2.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추가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업무 범위에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<u>지역사회기반</u> 연계 프로그램 등 3. ~ 5. (생략) ③·④ (생략)	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사후관리체계</u> 구축, <u>지역사회기반</u>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현행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‘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

센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을 통해 추가하려는 업무(사후관리체계 구축)는 센터의 설치·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로 보임.

※ 집행기관 의견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

- 소관부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, 특히, 상위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하도록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,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므로 ‘원안’ 의견을 제출함.

2 종합의견

- 국내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최근 마약중독 환자 중 일반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시장으로 하여금 치료보호·감호가 종료된 사람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‘책무’를 규정하는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임.
- 또한,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시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센터이므로, 동 센터 업무에 ‘사후관리체계 구축’을 추가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생략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 의 자: 김영옥, 남창진 의원(2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
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이효원, 장태용, 최민규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마약류 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,123명에서 2022년 1만 8,395명, 2023년 27,611명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.
- 서울시 범죄 발생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서울 6,271명(전국 22.7%)으로 경기도(6,678명/24.2%) 다음으로 높음.
- 최근 5년간 10대와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1.4%로 30대(25.4%)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전체의 36%에 달함.
- 마약류 사범 재범률도 2022년 35%, 2023년 기준 32.8%로 높은 수준임.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.
- 이에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추가
(안 제3조 제2항).
- 나. 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 추가
(안 제6조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지역사회기반”을 “사후관리체계 구축, 지역사회기반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 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 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및 유해약 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. <신 설>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방지와 안전,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· 조사·홍보·교육 등 필요한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<u>지역사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② <u>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</u>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사후관</u>

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

3. ~ 5. (생 략)

③ · ④ (생 략)

리체계 구축, 지역사회기반 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3조(시장의 책무)제2항	△	약류 등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관련 비용 ¹⁾ 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에 문의하였으나 재정적 자원 등에 대한 대상 및 범위 등이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정보 또한 적어 추계가 곤란함
2	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제2항제2호		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제2항 및 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에 따른 마약류 등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 확인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사업단가(P), 사업대상(Q) 통계가 적고²⁾ 또한 이를 자체적으로 추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마약류 등 중독자 사후관리 구축비용을 추정하려면 재화와 사후관리 차이,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또한 최근 활발한 논의³⁾에 따라 추가로 구축될 사후관리체계의 규모를 파악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임

⇒ 참고로 마약류 등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(붙임 참조)은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추정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(사후관리 필요대상, 지원단가, 전문인력 필요여부 등)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 1) [재정소요 영향 검토 필요성]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은 통상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 차원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본 안의 경우 상위법령인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사후관리체계 구축비용 발생의 여지가 있어 추가 재정소요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

※ 상위법령 개정사항 <개정 2024. 10. 22.>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의2(국가 등의 책임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(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)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화를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

- 2) 서울소재 치료보호기관 최근 5개년 치료보호실적은 보유하고 있으나, 향후 늘어나는 인원을 추정할 만한 객관적 정보가 적어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곤란함
- 3)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%대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사후관리체계가 추가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음
⇒ 인력충원에 의한 인건비 증가, 재정적 지원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
※ 추계 시 활용되는 소요비용 표준 산식 및 검토사항

$$\text{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 사업 비용} = \boxed{\text{사업단가(P)}} \times \boxed{\text{지원대상(Q)}} \times \boxed{\text{기 간(T)}}$$

- (사업단가)4) 재정적 지원 사업단가(P)에 대한 객관적 정보 부족
- (사업대상) 치료감호·치료보호 대상에 대한 객관적 통계 부족(마약류 중독자 특성상 파악이 어려움)
- (기 간) 2026년부터 계속해서 비용 발생, 추계기간 5년간 발생 전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- 4) **[재활과 사후관리 차이]** 재활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고, 사후관리는 재활 등 치료가 끝난 인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(사례관리)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됨
-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) 문의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기추진하는 **성인중독치료클리닉**(의료인력 및 정신건강상담전문인력 등 인건비 발생)내 **사후관리를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** 볼 수 있으나 별도 추가 체계를 구축(**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여 추가 구축예상**)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참고로 국가 차원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식약처 기타공공기관)에 문의결과 현재 사후관리는 기존 입소대상자를 대상으로 퇴소 이후 **지속적 모니터링(사례관리)**을 통해 재발을 방지·관리하는 **행정적 지원**으로 확인됨

[붙임] 마약류 등 중독자 치료실태(치료보호) 및 관리체계 관련

□ (서울소재 기관별 구분) 최근 5년간 서울소재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현황

구분 시도	기관명	지정병상수	치료보호실적(명)				
			19	20	21	22	23
서울	서울특별시 은평병원	25	4	3	1	-	23
	국립정신건강센터	2	-	2	2	2	-
	강남을지병원	-	18년 136명(18.12.31.지정해제)				

주 : 타 지자체 소재 병원에 서울시 주민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근거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에는
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아 비용추계가 곤란함

자료 : 2023 마약류 범죄백서(대검찰청 발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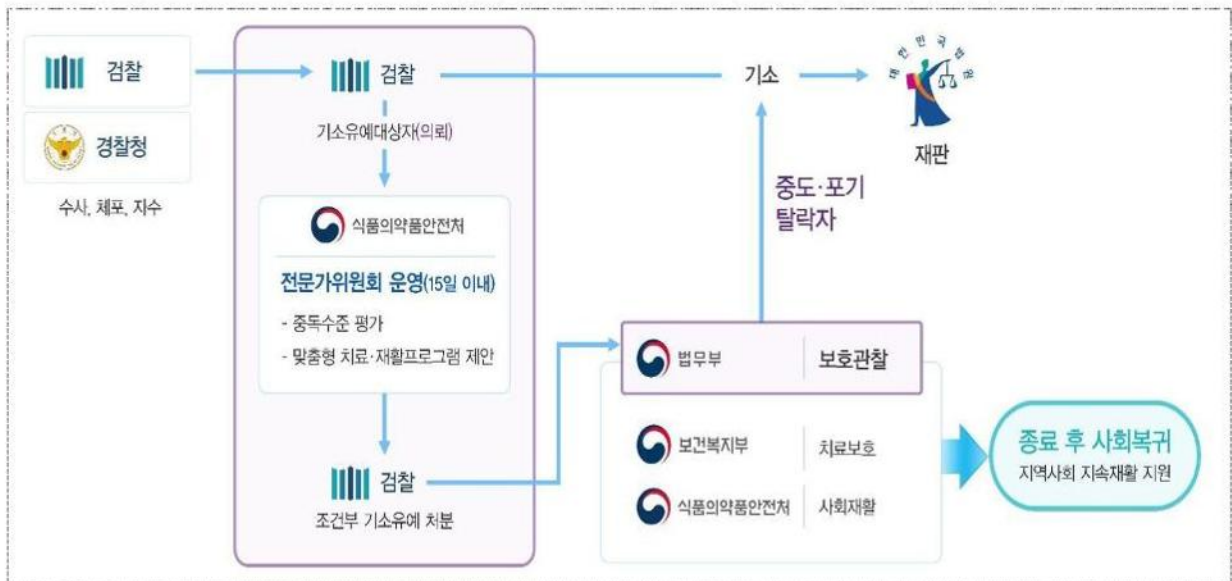
□ (전국단위 의뢰별 구분)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의뢰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별		2019	2020	2021	2022	2023
합계		260	143	280	421	641
입원	자의	89	48	90	81	226
	검찰의뢰	2	1	-	-	-
	기타의뢰	-	-	-	-	-
외래	자의	153	86	189	326	401
	검찰의뢰	16	8	1	14	14
	기타의뢰	-	-	-	-	-

자료 : 2023 마약류 범죄백서(대검찰청 발간)

□ (국가차원 관리체계) 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 체계도



자료 :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'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'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, 2024. 4. 15. 식약처 보도자료